

중국 회사법 개정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향

1. 중국 회사법 개정 및 주요 개정 내용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중국 회사법”) 개정안(이하 “개정 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회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회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 회사등록자본금 실제납입등기제도(实缴登记制)의 약정납입등기제도(认缴登记制)로의 변경·완화, ②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 및 현금 출자 비율에 대한 제한 폐지, ③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비율 및 납입기한 제한 폐지, ④ 등록자본금 검사제도 폐지인데, 이를 통하여 회사 설립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개인 내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개정 회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사 항
등록자본금 등기 조건 완화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을 등기하도록 하는 실제납입등기제도(实缴登记制)에서 향후 납입할 등록자본금만 등기하면 되는 약정납입등기제도(认缴登记制)로 변경·완화.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 제한 폐지	- 최저 등록자본금 제한(유한책임회사 3만 위안 이상,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10만 위안 이상, 주식유한회사 500만 위안 이상) 규정 폐지. -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름.
등록자본금 중 현금 출자비율 제한 폐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중 30%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한 현금 출자비율 제한 규정 폐지.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비율 및 납입기한 제한 폐지	• 등록자본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경우,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으로서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 이상인 금액을 최초 출자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등록자본금도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완납하도록 한 규정 폐지. •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비율 및 납입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름.
등록자본금 검사제도 폐지	• 주주가 출자한 후 회계법인의 출자검사보고서를 등기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 폐지.

2. 회사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영향

이번 회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 개정된 회사법 규정이 중국 내자기업(중국인 출자비율이 100%인 기업을 의미합니다)에 적용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회사법 제218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중국 회사법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 적용상 혼선이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 회사법이 2005년에 대폭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을 당시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국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적용상에 상당한 혼선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2006년 4월경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은 <외국인투자기업 인허가 등기 관리 법률 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집행 의견>을 반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 적용상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3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투자총액 개념 및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이 법정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을 여전히 적용하고, 등록자본금을 분할 납입하는 경우에도 회사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체 등록자본금의 15% 이상을 납입하며, 나머지 등록자본금도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완납하도록 하는 등 중국 회사법과는 다소 상이한 내용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사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도 개정 회사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용 문제와 관련한 행정법규 내지 집행의견이 추가로 반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회사법에는 회사 설립의 문턱을 낮추어 창업을 활성화하여 사회투자에 대한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회사법이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일정 부분 적용되는 방향으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조차 향후 좀더 유연한 중국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최용원 변호사 [북경사무소] | TEL. +86 10 8447 5343 | E-Mail. ywchoi@shinkim.com |
| ● 원중재 변호사 [상해사무소] | TEL. +86 21 6235 0411 | E-Mail. jjwon@shinkim.com |
|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 TEL. +82 2 316 4201 | E-Mail. tszheng@shinkim.com |
-